

[별표 4] <개정 2001.12.19., 2009.8.21., 2012.8.29., 2012.8.29., 2013.12.18.>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

구분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교	1 학력 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100
	2 국방대학원에서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과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수직에 근무한 경력	100
차	3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직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	100
	4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60
경	5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비전임교원(겸임교원, 초빙교원 등)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단, 주당 5시간 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70%를 넘지 못한다.	30-70
	6 중고등학교 교원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교과목과 부합되는 경우	60
년	7 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교육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운동부 포함) 및 대학의 경기지도자	50
연	9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단, 석·박사과정을 포함하되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재학기간
	10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료자로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재학기간
구	11 전공과 관련된 또 다른 학위를 취득한 경우	박사:3년x0.7 석사:2년x0.7
경	1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실험실습 포함)를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행한 경력	100
	13 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연구교수나 연구원(박사후과정연구원 포함) 으로 근무한 경력 단, 하프타임제로 근무한 경우는 50%로 한다.	70
편	14 대학의 총(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연구조교로 근무한 경력	50
	15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100
	16 민간산업체가 설치한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경력	70

구분	경 력 내 용	환산인정률 (%)
산 업 체 등	17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해당 전문 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18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70
	19 대학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70
	20 공과계 대학(공업교육대학, 공업교육학과 포함)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산업체에서 그 전공분야와 동일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	50
	21 대학 전공분야를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한 경력	50
	22 대학 신문학과 졸업자로서 언론기관에서 기자 및 편집원으로 근무한 경력	50
	23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	100
	24 공인회계사 개업기간	70
	25 외국 공관에서 해당전공에 부합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	70
	26 상과대학 졸업자로서 민간은행등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50
	27 세무사·공인감정사·토지평가사·변리사 개업기간	50
	근 무 경 력	28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
29 의과대학 졸업자의 의원 개업기간		50
30 국가 또는 공공단체 및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사 또는 연구강사로 근무한 경력		70
31 국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병원,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원의 전임 간호사으로 근무한 경력		50
32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 실기에 관한 단체 주요 간부로 근무한 경력		70

[별표 4의 2] <개정 2021.10.20.>

교육 및 연구경력 환산표(예·체능)

구 분	연 구 업 적	평 점
미 술	가. 국제전·미술대전·상공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1회 ◦ 특선 이상 1회 ◦ 국제전 출품 1회 	0.5점 1점 0.5점
	나. 지역 규모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선 이상 2회 ◦ 입선 4회 	1점 1점
	다. 공인된 개인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전 1회 ◦ 2인전 1회 ◦ 기획전 1회 	1점 0.5점 0.5점
	라.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선 1회 ◦ 특선 이상 1회 	0.25점 0.5점
	마.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 출품 1회	0.7점
	바. 국제전 심사위원 1회	0.5점
	사.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대전·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 ◦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 ◦ 시·도 단위 미술전람회 심사위원 1회 	1점 0.5점 0.25점
	가.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화·독주화·개인작곡발표회 1회	1점
	나. 국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 연주 단체에 의한 작품 초연 1회	0.7점
	다.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 3중주 이상,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의 반주 1회	0.5점
라.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 ◦ 협주곡 협연, 오페라 주역 1회 	0.3점 1점	
체 육	가.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연구발표회 1회	1점
	나. 올림픽경기 출전	1점
	다. 전국대회 입상 2회	1점
	라. 국제 공인심판 자격 1회	1점
마.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수회 강사 50시간	1점	
창 작 실 기	가.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	1점
	나.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	1점
기 타	학·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 분야의 훈장 1회	2점

※ 1점을 1년의 연구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1년에 1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최대 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